

울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13403, 2019가합667(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배당이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창민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준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8. 2.자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대한민국(소관 동물산세무서,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 및 이에 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울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9. 6. 1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79,606,5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03,901,476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25억 원 대출 약정

1) C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소유의 거제시 F 외 4필지 토지, 그 지상의 3동 G 건물과 부속물 일체(이하 ‘G’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재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계획하고 2018. 3.경 피고에게 G 매수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 50억 원 중 일부의 대출과 잔금 및 부가가치세 대출기관의 주선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현장실사, 감정평가 등의 대출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25억 원 상당의 계약금 대출을 결정하였고 2018. 4. 27. C와 사이에 C에게 25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이하 ‘계약금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계약금 대출에 관한 대출약정서 제3조 제2항 제6호는 대출금 인출 선행조건으로 ‘C가 대출금 입금계좌에 30억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또는 입금에 준하는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대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H와 원고의 C에 대한 각 15억 원 대여

1) C는 계약금 대출의 인출 선행조건 준수를 위하여 2018. 4. 3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위 대출금 입금계좌에 입금하였다.

2) 원고도 C의 요청으로 2018. 5. 21.경 C에게 G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변제기로 정하여 15억 원을 대여하면서, 5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C는 2018. 5. 24. E와 사이에 G를 매매대금 540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50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90억 원과 부가가치세 1,479,606,540원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8. 5. 24. E에게 H와 원고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도 E에게 계약금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 25억 원 중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20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초 2018. 5. 4. 체결되었다가 C가 잔여 계약금을 조달하지 못하던 중 2018. 5. 21.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함에 따라 2018. 5. 24.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체결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1항에는 E이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C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E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E은 계약금 50억 중 35억 원을 물취하고, 나머지 15억 원을 원고의 I은행 계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잔금대출 약정의 체결 등

1)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및 부가가치세 대출 주선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대주단을 모집하여 C에게 J 주식회사 등 4개 금융기관이 182억 원을, K조합 등 11개 금융기관이 358억 원을 각 담보대출하는 약정을 주선하였다.

2) 그에 따라 C는 2018. 7. 27. J 주식회사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G 중 일부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후 신탁 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182억 원을 대출받는 약정(이하 ‘제1잔금대출’이라고 한다)과 K조합 등 1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G 중 일부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후 신탁 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358억 원을 대출받는 약정(이하 ‘제2잔금대출’이라고 하고, 제1잔금대출약정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잔금대출’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잔금대출에 관한 담보대출약정서 제2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서가 포함된 서류의 제출을 대출금 인출 선행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 제3호는 인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가세 환급금 중 2억 원(제1잔금대출의 경우)

또는 4억 원(제2잔금대출의 경우)을 운영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피고도 2018. 7. 27. C와 사이에 C는 G와 관련한 부가세 환급 계좌를 피고가 인정하는 계좌로 지정하고, 환급되는 부가세액 중 8억 원을 계약금대출 인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계약금대출 원금의 조기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잔금대출의 실행

1) C는 이 사건 각 잔금대출에서 대출금 인출 선행조건으로 정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제출을 위해 2018. 7.경까지 체납하고 있던 2017년 귀속 법인세 약 20억 원의 납부가 필요하였다.

2) 이에 C는 피고의 주선으로 2018. 8. 2.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L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날 피고와 사이에 C를 채무자 겸 양도담보설정자, 피고를 채권자 겸 양도담보권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가 동물산세무서에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1,479,606,540원을 한도로 하는 부가세환급금채권(이하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이라고 한다)을 양도대상권리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양도담보권자(피고, 이하 같다)의 권리행사

1. 본 계약에 의한 담보권이 설정된 부가세환급금 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양도담보권자가 행사하도록 한다. 양도담보권자가 본항에 따라 채권을 추심한 때에 양도담보권자는 수령한 금액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양도담보설정자(C, 이하 같다)는 부가세환급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설정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고, 본 약정에 정한 것과 다른 방법 및 다른 계좌로 수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4. 양도담보권자는 본 약정에 따라 수령하는 부가세환급금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집행하기로 한다.

1) 2억 원은 제1잔금대출의 담보대출약정상 운영계좌로, 4억 원은 제2잔금대출의 담보대출약정상 운영계좌로 각 이체

- 2)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채무자 및 L 사이에 2018년 8월 2일 체결된 대출약정금 9억 원의 대출약정상 부가세 환급 당시 잔존 대출원금 상환
- 3) 잔존 금원은 전액 계약금대출 약정상 대출금 조기상환
- 3) C는 2018. 8. 3. L 대출금에 추가로 조달한 금원을 더하여 체납 중이던 법인세 중 약 10억 원을 납부하고, 2018. 8. 6.경 M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여 체납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피고 및 대주단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각 잔금대출 540억 원이 실행되었다.
- 4) C로부터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8. 8. 9. 동울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에 관한 채권양도담보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동울산세무서장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의 발생 및 동울산세무서장의 공탁

- 1) C는 2018. 9.경 동울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의 조기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조기 환급을 받지는 못하고, 2019. 1. 25.경 정기 환급 신청으로 2019. 3.경 C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 2) 그런데 동울산세무서장은 2019. 3. 19.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02호로 C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통지 후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공탁하였다.

사. 배당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배당이의

- 1) 동울산세무서장의 위 공탁금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6. 10.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479,606,540원, 동울산세무서에 7,761,804원을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는 진술을 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6. 14.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5, 16호증, 을 제5 내지 16(원고는 을 제11호증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는 피고가 임의로 C의 인감증명을 날인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아래 제3의 가. 1)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5, 28,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무효

1)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피고가 C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C의 인감증명을 날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제4조 제4항 제2호는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L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L 대출금 9억 원은 이미 상환이 완료되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서 정한 위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는 서로 공모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

G는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위 공매 절차가 마무리되면 낙찰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제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잔금대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 합계 6억 원도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오로지 C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고의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나. 손해행위 취소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다. 배당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1,479,606,5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03,901,476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는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법인인감은 같은 날 체결된 L 대출약정서, 연대보증계약서 등과 함께 법무법인 O의 담당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날인이 이루어졌으며, 위 날인 이후 C의 법인인감은 바로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N도 함께 날인된 L 대출약정서, 연대보증계약서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L 대출약정서, 연대보증계약서와 달리 함께 날인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 날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N의 진술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C는 당시 체납하고 있던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N도 피고의 담당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원고에게 추가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담보로 체납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체납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체결된 L 대출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④ N은 2018. 9. 28. 법무법인 O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 C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을 제11호증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 계약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당시 체납하고 있던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L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L 대출금이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변제되었다거나 G에 관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C와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2018. 5. 21.경 C에게 1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또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은 이 사건 각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C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과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잔금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출금 인출 선행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C가 체납하고 있던 법인세의 완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C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납 법인세를 납부할 재원 마련 목적으로 L 대출을 받으면서 그 필요에 의해 향후 발생할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L 대출금은 C의 체납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모두 사용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을 통하여 C의 체납 법인세 납부가 가능해지고, 이 사건 각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과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납부됨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이 가능하게 된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가 유발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2018. 8. 2.로부터 6일 후인 2018. 8. 8. L 대출은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과 무관하게 변제가 가능하였고, 이후 실제로 전부 변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이 L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2018. 8. 8. L 대출금 중 5억 4,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당시 C의 계좌에 잔여 L 대출금을 초과하는 잔액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변제된 5억 4,0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은 피고가 C로부터 수령할 이 사건 각 잔금대출에 관한 금융자문 수수료 중 일부로, 위 금융자문 수수료는 이 사건 각 잔금대출 인출일에 이 사건 각 잔금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잔금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피고의 금융자문 수수료 중 일부를 통하여 L 대출금의 변제가 가능하게 된 점, 나머지 2억 원은 C가 2018. 8. 8. M로부터 차용한 돈 중 체납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그 재원으로 하는데, 위 금원 역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이후에 C가 조달한 자금인 점, 2018. 8. 8. C 계좌에 있던 잔액도 이 사건 각 잔금대출이 실행된 후 E에게 잔금과 건물분부가세를 지급하고 남은 금원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으로 다른 자금을 통한 변제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L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이 L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C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 외에는 달리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없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체납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잔금대출이 실행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한 금원의 계약금까지 물취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 등 가능한 담보를 제공한 후 추가로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체납 법인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사업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C가 체납 법인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유통을 위하여 담보제공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부가세환급금을 부득이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C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배당이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옥, 판사 조현선, 판사 이현일

목 록

대한민국(소관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주식회사 C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국세(부가가치세) 환급금 1,486,778,690원 반환채권. 끝.